

여성위원회 규정

2011. 2. 23.



[사]대한근대5종연맹

대한근대5종연맹 여성위원회 규정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근대5종연맹(이하 “본연맹”라 한다) 정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여성체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여성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3. 여성체육시설에 관한 사항
4.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
5.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
7.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1인
2. 부위원장 1~3인
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본연맹 직원중에서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회의 본 연맹 선임임원의 임기와 같다.(2013. 5.21 개정)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9 조(회의 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<부 칙>

부 칙 <2011. 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(2011. 2. 23.)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5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 승인(2013. 5. 21.)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